

미래사회통합연구소 규정

시행 : 2019. 8. 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부설 미래사회통합연구소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정치의 대응을 다루면서 미래사회의 구조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에 주목한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폭넓게 다룬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 연구와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용역의 수행
2. 간행물 발간
3.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의 개최
4.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5. 정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제5조(조직)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 예산안 심의 및 의결
2. 시민정치연구팀: 정치참여, 정치 태도 등과 관련한 연구 전담
3. 정치제도연구팀: 정부, 의회 및 정당 정치 등과 관련한 연구 전담
4. 국제관계연구팀: 안보, 외교, 분쟁, 국제협력, 지역통합 등과 관련한 연구 전담
5. 정보자료팀: 각종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DB 구축, 확산과 관련한 연구 전담
6. 사무국: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연구팀 활동 지원 등

제6조(구성원)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소장)

- ① 소장은 현직 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 ① 연구소는 상임 연구원과 전문 연구원, 객원 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 ② 상임연구원은 본교 전임 교원으로 한다.
- ③ 전문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 ④ 객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특정연구과제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에 초빙된 자
 - 2. 연구소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소속되어 연 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조(연구보조원)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학사과정 이상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 영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
- 2. 전문연구원의 추천 및 심의
- 3. 예산 및 결산
- 4. 본 연구소 규정의 제 · 개정 및 폐지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기타위원회) 소장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획·평가·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 목으로 충당한다.

- 1. 정부 및 대외기관 지원 학술연구 용역 사업비
- 2. 본교의 대응자금
- 3. 보조금 및 기부금
- 4. 기금 및 이익금
- 5. 기타 수입금

제13조(운영세칙)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